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접경지역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일부 개정(2021.4.21. 시행)으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소속 및 위원장이 변경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연직 위원, 간사 및 위촉직위원 위촉권자를 변경하고,
- 나.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의견(위원회 구성시 특정성별에 불리하지 않도록 성별 고려)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재산가치 평가시 감정평가법인만이 평가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법인과 감정평가 사무소도 참여토록 개선 필요)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위원, 간사 및 위촉직위원 위촉권자 변경 명시(안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항)
- 나. 위촉직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토록 명시(안 제8조 제1항 제3호)
- 다. 재산가치 및 설치비용의 평가 주체 확대(안 제17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입법예고 전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통일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3호 중 “중”을 “중 성별을 고려하여”로 “국무총리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7조 중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8조(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통일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지역개발, 국토계획, 관광, 물류, 환경, 그 밖에 접경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12명의 범위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3. ----- ----- ----- ----중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illegible]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연 락 처	(044) 205 - 3511